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약관

이 보험계약에서 인용된 법령내용은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 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 니다.
  - 나. 장해 : (별표 3)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4.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 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표준이율 :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 (3.25%)을 말합니다.
  -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 : 재해사망보험금
- 2. 2종(만기환급형)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 자가 살아있을 경우
  - : 만기환급금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25조(계약의 소멸)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

- 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 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 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제20조(계약내용 의 변경 등)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최종보험 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⑦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 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

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 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③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 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
- ① 제1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 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5) 이 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1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 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 (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합니다)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 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의 동의서(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책임준 비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 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

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4(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7항에 따라 장 해지급률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 에 따르기로 한 경우

#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지급하는 제도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가지급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 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경우 조 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10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 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합니다.

##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 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 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 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 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 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 다.
- ④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설명]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 는 방법

#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시 키는 방법

#### 보험금 삭감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가입 후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 보험료 할증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 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 제17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 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

- 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 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 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 제19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 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 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

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에 등의 심신장에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 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 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 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 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의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보험가입금액
  - 5. 계약자
  - 6.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 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 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 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 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 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 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 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 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 다.

#### 제21조 (피보험자의 변경)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다만,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 유로 사망하거나 피보험자가 퇴직 등으로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은 후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보험계약의 성립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을 준용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지환급금을 정산하여 변경전·후의 해지환급금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거나 장래의 보험료에 충당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새로운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변경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신청서 (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에는 사망 당시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책 임준비금(이하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①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에서 제4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제4항, 제13조 (계약 전 알릴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 내용 및 회사의 승낙기준 등은 변경 전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제22조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고 보험료를 납입중인 때에는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다만, 단체에서 보험 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단체에서 부담한 보험료부 분까지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계약자가 제21조 (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에는 제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23조 (계약자의 권리행사)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계약은 피보험자가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20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3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항 및 제2항,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서면동의 철회권"),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2항, 제36조(보험계약대출)의 권리를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24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 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 제25조 (계약의 소멸)

①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21조(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2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 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 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 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 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 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제27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 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28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

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 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휴대전화 문자메세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 하여 드립니다.

#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 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 료(특약보험료 포함, 이하 "연체보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 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 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 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 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 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계약 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표준이율+1%」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성립) 제2항에서 제4항 및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 진 경우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을 최초 청 약 할 때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 제31조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 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3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 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 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 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 [설명]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를 고의로 발생시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35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36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이 부가된경우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 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 습니다.
- ③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 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3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40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해당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5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제41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 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 지 않습니다.

#### 제4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4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

- 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44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45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제4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금지급기준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土し	기 ㅁㅁㅋ 1,000단면 기단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재해사망 보험금 (약관 제3조 제1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 만원
		○ (1형) 50%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
만기환급금 (약관 제3조 제2호)	2종(만기환급형)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 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2형) 70%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70%
		○ (4형) 100%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 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변경되었을 때 만기환급금은 최종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정한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재해분류표

####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 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장해분류표

## 총칙

#### 1. 장해의 정의

- 1) "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 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10
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5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 5)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

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 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 대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45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 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 다. 귓바퀴의 결손

1)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 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3. 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10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 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 6) "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 9) "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 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times10$ cm(1/2 크기는 40cm, 1/4 크기는 20cm),  $6\sim11$ 세의 경우는  $6\times8$ cm(1/2 크기는 24cm, 1/4 크기는 12cm), 6세 미만의 경우는  $4\times6$ cm(1/2 크기는 12cm, 1/4 크기는 6cm)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 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 제1, 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 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두 마디 이상 수술하거
  - 추간판달출승(속정 니스크)으로 추간판을 누 마니 이상 수술하기 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한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 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7. 체간골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 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 8. 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 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30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10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5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 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 9. 다리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10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5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0. 손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0
(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3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10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5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 (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 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
- 4) "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1. 발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5
(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2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8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3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 1) "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 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 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2. 횽·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70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40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

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 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로 한다.

#### 2) 정신행동

- ① 위의 정신행동 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 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 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 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①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ሁ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 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서,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ul> <li>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li> <li>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li> <li>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li> <li>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10%)</li> </ul>
음식물 섭취	<ul> <li>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li> <li>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li> <li>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10%)</li> <li>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li> </ul>
배변·배뇨	<ul> <li>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li> <li>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li> <li>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li> </ul>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 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 가능한 상태(3%)

#### (별표 4)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35 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재해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책임준비금 (제5조 및 제25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 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만기 환급금 (제3조 제2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ul><li>1년이내</li><li>: 표준이율의 50%</li><li>1년초과기간</li><li>: 1%</li></ul>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제3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까지의 기간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	<ul><li>1년이내</li><li>: 표준이율의 50%</li><li>1년초과기간</li><li>: 1%</li></ul>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40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재해장해보장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 해상태를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이하 "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 재해장해연금
- 2.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 중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재해장해급여금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 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 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 ④ 제1항의「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 를 말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 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 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①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 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 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 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해급여 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⑩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것 으로 간주한 장해급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따르거나 또는 그 이전 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 위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및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설명]

가입 전: 팔에 장해지급률 30%의 장해상태

가입 후 : 동일한 재해로 팔에 장해지급률 50%가

가중되어 80%의 장해상태

이 경우 팔의 최종 장해상태는 장해지급률 80%이나, 가입 전 장해지급률 30%를 뺀 장해지급률 50%에 해당하는 장해 급여금을 지급

- ⑪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②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4)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해장해연금은 보험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이 특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 인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5)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해장해연금은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하" 발생해당일"이라 합니다)에 지 급합니다. 다만,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 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 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 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 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의 동의서(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 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책임준 비금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4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 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 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10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12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 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보험계약대출 등

- 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 지하지 않습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 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3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의 규정을 따 릅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 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17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7관 기타사항 등

#### 제1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별표1)

#### 보험금지급기준표

급부명 칭	지 급 사 유			
재해 장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연금 (약관	총 지급금 액	지급기준	가입금액	1회 지급액
제3조 제1호)	2,000만원	매년 가입금액의 10% x 20회(확정지급)	1,000만원	100만원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0-10	,,,,,,,,,
급부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재해 장해 급여금 (약관 제3조 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중 3%이 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 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재해장해연금은 보험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이 특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표2)

####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 참조

(별표3)

####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약관 (별표3) 장해분류표 참조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재해장해급 초년도 재해 (제3조 제1호 호) 책임준 (제5조 및	장해연금 <sup>호</sup> 및 제2 비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2차년도 이후 재해장해연금 (제3조 제1 호)	지급사유 가 발생 한 날의 다음 날 부터 청 구일까지 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 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내	표준이율
		보험기간 만기일 (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 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후	・1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7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 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 간	・1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2차년도 이후 재해장해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표준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휴일재해보장특약 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휴일재해보장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휴일재해보장특약 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 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 해상태를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휴일 : 「토요일」, 「근로자의 날」및「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 발생지의 "토요일", "일요일" 및 "사고 발생지의 법률에 따라 관공 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휴일"로 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 휴일재해사망보험금
- 2.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중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휴일재해장해급여금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 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 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장해지급률이 재해 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

- 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 를 말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 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①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 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⑧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 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 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⑩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다른 재해로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 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해급여 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 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 급 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급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따르거나 또는 그 이전 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및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설명]

가입 전 : 팔에 장해지급률 30%의 장해상태

가입 후 : 동일한 재해로 팔에 장해지급률 50%가

가중되어 80%의 장해상태

이 경우 팔의 최종 장해상태는 장해지급률 80%이나, 가입 전 장해지급률 30%를 뺀 장해지급률 50%에 해당하는 장 해급여금을 지급

- ⑫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히 그 결과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경우에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 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 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 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 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의 동의서(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 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책임준 비금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4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 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 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10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 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특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유효합니다.

####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에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12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 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3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의 규정을 따 릅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② 제10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 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 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17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7관 기타사항 등

#### 제1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금지급기준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휴일재해 사망보험금 (약관 제3조 제1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휴일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3조 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중 3%이상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 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이 특약에서 "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 「근로자의 날」및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합니다.

(별표2)

####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 참조

(별표3)

####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약관 (별표3) 장해분류표 참조

#### (별표 4)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휴일재해사망보험금 및 휴일재해장해급여금 (제3조 제1호 및 제2 호) 책임준비금 (제5조 및 제9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7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 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 간	・1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교통재해보장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교통재해 : (별표 3)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재해 를 말합니다.
  - 다. 장해 :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 상태를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2.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중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 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 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 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장해지급률이 재해 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 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 ⑤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 를 말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 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①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 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⑧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 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 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다른 재해로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 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 급 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급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따르거나 또는 그 이전 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위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및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설명]

가입 전 : 팔에 장해지급률 30%의 장해상태

가입 후 : 동일한 재해로 팔에 장해지급률 50%가

가중되어 80%의 장해상태

이 경우 팔의 최종 장해상태는 장해지급률 80%이나, 가입 전 장해지급률 30%를 뺀 장해지급률 50%에 해당하는 장 해급여금을 지급

- ⑫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히 그 결과 교통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 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 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 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 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의 동의서(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 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책임준 비금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5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 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 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10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 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특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 를 말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 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12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 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 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復活)청약을 받은 경우

- 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3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② 제10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 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 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17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7관 기타사항 등

#### 제1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 을 따릅니다. (별표1)

#### 보험금지급기준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약관 제3조 제1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 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3조 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 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 해지급률 중 3%이상 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sup>※</sup>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 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별표2)

####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 참조

#### 교통재해 분류표

-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 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다. 도로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화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레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 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 4. 제1호 " 가" 또는 "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4)

####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약관 (별표3) 장해분류표 참조

#### (별표 5)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및 교통재해장해급여금 (제3조 제1호 및 제2 호) 책임준비금 (제5조 및 제9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7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 간	・1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출퇴근야간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출퇴근야간교통 재해보장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출퇴근야간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 다.
  - 나. 교통재해 : (별표 3)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재해 를 말합니다.
  - 다. 장해 :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 해상태를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출퇴근 및 야간 시간 :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 지를 말하며, 이 경우 시간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간을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출퇴근 및 야간 시간에 발생한 교통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출퇴근야간교통 재해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 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 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 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 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 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 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①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 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히 그 결과 출퇴근야간교통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출퇴근야간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 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 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 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 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의 동의서(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 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책임준 비금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5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 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 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10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

- 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 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특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유효합니다.

####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에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12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 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 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3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② 제10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 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 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17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7관 기타사항 등

# 제1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 보험금지급기준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0-10	_ , ,,,,,,,,,,,,,,,,,,,,,,,,,,,,,,,,,,,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출퇴근야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약관 제3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출퇴근 및 야간시간에 발생한 교통재해 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만원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 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출퇴근 및 야간시간"이라 함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시간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간을 말합니다.

(별표2)

#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 참조

#### 교통재해 분류표

-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 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다. 도로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화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레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 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 4. 제1호 " 가" 또는 "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4)

#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약관 (별표3) 장해분류표 참조

## (별표 5)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제8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출퇴근야간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제3조) 책임준비금 (제5조 및 제9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 간	・1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제17조 제1항)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2형]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2형]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2형] 약관 (주피형, 종피형)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 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 상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 격증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수술이란 기구를 사용하여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등은 수술에서 제외됩니다.

####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분류표(별표2 참조) 에서 정하는 골절(이하"골절"이라 합니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 골절치료급여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 2.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 재해수술급여금(수술1회당)

##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그 질병으로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⑥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재해발생 1회당 1회의 골절치료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따라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⑧ 제7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 ⑨ 제1항 및 제6항의「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별표4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다만,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3)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④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구분에 준하 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 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 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골절진단서, 수술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 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 ③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 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 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 ⑤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의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12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1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1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 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 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

#### 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 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 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5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의 규정을 따 릅니다.

##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19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보험 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6관 기타사항 등

##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 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골절치료 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 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이 발생 하였을 경우	골절발생 1회당 30만원
재해수술 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1회당 100만원

-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골절치료급여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 생할 경우에도 재해발생 1회당 1회의 골절치료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재해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척추 및 척수의 출산 손상	P11.5
2.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P13.0
3. 기타 두개골의 출산손상	P13.1
4.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2
5. 기타 긴뼈의 출산손상	P13.3
6.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 골절	P13.4
7. 기타 골격 부분의 출산손상	P13.8
8. 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P13.9
9.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S02.5는 제외)
10. 목의 골절	S12
11.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1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13.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14. 아래팔의 골절	S52
15.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6. 대퇴골의 골절	S72
17.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8.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9. 여러 신체부위의 골절	T02
20.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Т08

분류항목	분류번호
21.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T10
22.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T12
23.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재해분류표

####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 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장해분류표

## 총칙

#### 1. 장해의 정의

- 1) "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 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10
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5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정 도를 평가한다.
- 5)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 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 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45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 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 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 다. 귓바퀴의 결손

1)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 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3. 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 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 9) "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5
4) 최도에 취원의 구성(구원 모급)를 임신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 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times10$ cm(1/2 크기는 40cm, 1/4 크기는 20cm),  $6\sim11$ 세의 경우는  $6\times8$ cm(1/2 크기는 24cm, 1/4 크기는 12cm), 6세 미만의 경우는  $4\times6$ cm(1/2 크기는 12cm, 1/4 크기는 6cm)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40 30 10 50 30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o) (C3) = 2] = [2 - 7 / 2   C1 / 2 /	4.5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약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 제1,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 이 있을 때
-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 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 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두 마디 이상 수술하거 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한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

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 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7. 체간골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 8. 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 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30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10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5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10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5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 10. 손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0
(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3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10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5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마다)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 (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 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 다.
- 4) "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1. 발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5
(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2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8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3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마다)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 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2. 흥·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1) 신경계
  - ① "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2) 정신행동

- ① 위의 정신행동 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 <붙임> 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 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 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 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①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J)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 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서,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ul> <li>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li> <li>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li> <li>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li> <li>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10%)</li> </ul>
음식물 섭취	<ul> <li>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li> <li>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li> <li>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10%)</li> <li>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li> </ul>
배변·배뇨	<ul> <li>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li> <li>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li> <li>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li> </ul>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 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 가능한 상태(3%)

## ( 별표 5 )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골절치료금여금 등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X (제4조 제1호 및 제2호) 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제19조	환급금 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제1항)	청구일의 다음 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재해수술특약 [2형]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재해수술특약[2형]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무배당 재해수술특약 [2형] 약관 (주피형, 종피형)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 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 상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 격증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수술이란 기구를 사용하여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등은 수술에서 제외됩니다.

##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 해수술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 다.

##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 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 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그 질병으로 추가진단 (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합니다.
- 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따라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 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답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수술진단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 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 ③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 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 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 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 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 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 ⑤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의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12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1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1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 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 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 일과 동일합니다.

##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 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 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5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19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 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6관 기타사항 등

##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별표 1 )

## 보험금 지급기준표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재해수술 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 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 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재해분류표

##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장해분류표

## 총칙

####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 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 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 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10
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5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하다
-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정 도를 평가한다.
- 5)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 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 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80 45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 다. 귓바퀴의 결손

1)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 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3. 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 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 9) "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5
2) 최도에 확신의 부성(부인 모급)들 담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 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times10$ cm(1/2 크기는 40cm, 1/4 크기는 20cm),  $6\sim11$ 세의 경우는  $6\times8$ cm(1/2 크기는 24cm, 1/4 크기는 12cm), 6세 미만의 경우는  $4\times6$ cm(1/2 크기는 12cm, 1/4 크기는 6cm)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40 30 10 50 30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o) (C3) = 2] = [2 - 7 / 2   C1 / 2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약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 제1,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 이 있을 때
-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 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 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두 마디 이상 수술하거 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한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

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 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7. 체간골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 8. 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 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30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10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5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10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5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

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산한다.

#### 10. 손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0
(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3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10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5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마다)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 (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

- 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1. 발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5
(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2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8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3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마다)	

- 1) "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 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 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 12. 흥·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

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1) 신경계
  - ① "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

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로 한다.

#### 2) 정신행동

- ① 위의 정신행동 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 <붙임> 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 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 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 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 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①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ሁ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 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

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 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서,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ul> <li>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li> <li>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li> <li>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li> <li>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10%)</li> </ul>
음식물 섭취	<ul> <li>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li> <li>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li> <li>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10%)</li> <li>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li> </ul>
배변·배뇨	<ul> <li>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li> <li>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li> <li>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li> </ul>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 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 가능한 상태(3%)

## ( 별표 4)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재 ਰੈ	해수술급여금 (제4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제19조	. 기급자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정구일 금  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제1항)	청구일의 다음 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재해입원특약 II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재해입원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무배당 재해입원특약॥ 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 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 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 해상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 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보험자 의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입• 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입원급여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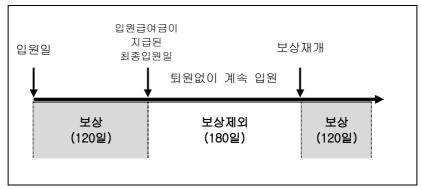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면제

-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 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중 해당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 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 니다.
-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⑥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⑦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입원급여금의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⑧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입원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동

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서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따른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거나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 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① 제6항, 제9항 및 제10항의 계속 입원이란 중도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1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 (5)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 를 말합니다.
- (b)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⑩ 제1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비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서 정하 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입·퇴원확인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 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 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 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2항 제2호'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 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2 명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 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

- 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 제12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1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1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 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과 동일합니다.

#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

- 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5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19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6관 기타사항 등

##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재해 입원급여금 (제4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 간 중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 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 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재해분류표

####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 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장해분류표

## 총칙

####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 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10
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5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정 도를 평가한다.
- 5)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 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 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 대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45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임피던스 청력검사,뇌간유발반 응청력검사(ABR),자기청력계기검사,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 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 다. 귓바퀴의 결손

1)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 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3. 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40

장해의 분류	지급률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10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10

####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 9) "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	·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 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를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times10$ cm(1/2 크기는 40cm, 1/4 크기는 20cm),  $6\sim11$ 세의 경우는  $6\times8$ cm(1/2 크기는 24cm, 1/4 크기는 12cm), 6세 미만의 경우는  $4\times6$ cm(1/2 크기는 12cm, 1/4 크기는 6cm)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 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 제1,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 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 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두 마디 이상 수술하거 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한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 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7. 체간골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ul><li>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li><li>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li></ul>	15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 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 8. 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 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30
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10
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5

	장해의 분류	지급률
8) 한 팔에	때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뼈에 기형을 남긴 때	20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군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 제한된 경우

-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를 말한다.
- 8)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 9. 다리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30
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10
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5
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 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0. 손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0
(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3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10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5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

- 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 (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 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 다.
- 4) "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1. 발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5
(발가락 하나 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2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8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3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 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 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2. 흥·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로 한다.

#### 2) 정신행동

- ① 위의 정신행동 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 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 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①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J)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 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 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서,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ul> <li>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li> <li>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li> <li>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li> <li>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li> </ul>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 태(3%)
옷입고 벗기	<ul> <li>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li> <li>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li> <li>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li> </ul>

## ( 별표 4)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 관련)

## 1. 재해입원급여금 ( 제4조 )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2. 해지환급금 ( 제19조 제1항 )

기 간 지급이기		급 이 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의 50%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배당 입원특약II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입원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무배당 입원특약॥ 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 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 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 해상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 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보험자 의 질병 또는 재해(별표 2 "질병 및 재해분류표" 참조, 이 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 (입• 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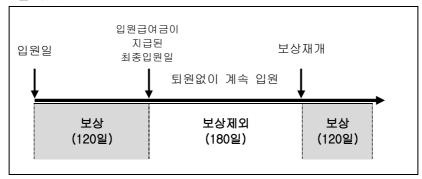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질병재해입원급여금(별표1 "보험금지 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 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 니다.
-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⑥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입원급여금의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⑧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입원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입원으로 보아서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7항의 규정을적용합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따른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거나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 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① 제6항, 제9항 및 제10항의 계속 입원이란 중도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① 제1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5)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 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1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비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서 정하 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입·퇴원확인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 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 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 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2항 제2호'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 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 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의 피보험자

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 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 제12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1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1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 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과 동일합니다.

##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5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

-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19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6관 기타사항 등

##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병재해 입원급여금 (제4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 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 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질병 및 재해분류표

####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 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 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위의 질병 및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 및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장해분류표

## 총칙

####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 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10
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5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정 도를 평가한다.
- 5)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 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 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 대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45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임피던스 청력검사,뇌간유발반 응청력검사(ABR),자기청력계기검사,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 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 다. 귓바퀴의 결손

1)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 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3. 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40

장해의 분류	지급률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10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10

####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 9) "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	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 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를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times10$ cm(1/2 크기는 40cm, 1/4 크기는 20cm),  $6\sim11$ 세의 경우는  $6\times8$ cm(1/2 크기는 24cm, 1/4 크기는 12cm), 6세 미만의 경우는  $4\times6$ cm(1/2 크기는 12cm, 1/4 크기는 6cm)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 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 제1,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 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 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두 마디 이상 수술하거 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한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 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7. 체간골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 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 8. 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 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30
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10
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5

	장해의 분류	지급률
8) 한 팔에	때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뼈에 기형을 남긴 때	20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군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 제한된 경우

-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를 말한다.
- 8)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 9. 다리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30
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10
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5
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하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 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0. 손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0
(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3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10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5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

- 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 (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 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 다.
- 4) "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1. 발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5
(발가락 하나 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2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8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3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 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 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2. 흥·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로 한다.

#### 2) 정신행동

- ① 위의 정신행동 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 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 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①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J)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 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 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서,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ul> <li>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li> <li>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li> <li>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li> <li>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li> </ul>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 태(3%)
옷입고 벗기	<ul> <li>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li> <li>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li> <li>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li> </ul>

# 재해분류표

####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 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 별표 5)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 관련)

# 1. 질병재해입원급여금 ( 제4조 )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2. 해지환급금 ( 제19조 제1항 )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표준이율 의 50%
	1년 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일반사망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일반사망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무배당 일반사망특약 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 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사 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특약 보 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 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 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중 해당 질병과 관

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4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니다.
- 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 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 류표(별표2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 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만을 적용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 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 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 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별표2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2호 및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 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1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 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

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구분에 준 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 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보험금지급 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제1항의「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 해를 말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

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 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 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 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제10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

- 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특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유효합니다.

#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에 등의 심신장 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 한 계약으로 보나, 제 2 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 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 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 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까지로 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 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 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7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 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 우로서 제1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 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

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 13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금급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0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 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

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17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6관 기타사항 등

# 제18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재해분류표

####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장해분류표

# 총칙

#### 1. 장해의 정의

- 1) "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 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10
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5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 5)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 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 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 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 대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 는 상태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45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 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 다. 귓바퀴의 결손

1)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 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3. 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당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 9) "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 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times10$ cm(1/2 크기는 40cm, 1/4 크기는 20cm),  $6\sim11$ 세의 경우는  $6\times8$ cm(1/2 크기는 24cm, 1/4 크기는 12cm), 6세 미만의 경우는  $4\times6$ cm(1/2 크기는 12cm, 1/4 크기는 6cm)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 제1, 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 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가파탈춬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가파을 두 마디
  -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두 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한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 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7. 체간골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 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 8. 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 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60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20 10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 9. 다리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6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 때	30
	2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10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5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 10. 손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마다)	5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 (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 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 다.
- 4) "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

- 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1. 발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5
(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2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8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3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마다)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 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2. 흥·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70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2) 정신행동

- ① 위의 정신행동 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 <붙임> 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 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 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 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①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J)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 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서,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배변·배뇨	<ul> <li>-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li> <li>-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li> <li>-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5%)</li> </ul>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ul> <li>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li> <li>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li> <li>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li> </ul>		

### (별표3)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일반사망보험금 (제3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지급 사유가	1년이내 :표준이율의50%
해지환	환급금 조 제1항)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초과기간 :1%
(제17조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계약
		지급일까지의 기간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소멸 시효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배당 교보신산업재해사망특약 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신산업재해사망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무배당 교보신산업재해사망특약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 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주피보험자 : 피보험자 2 명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 다
  - 나. 장해 :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 해상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이하 "업무상의 재해"라 합니 다)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 액의 전액을 산재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 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 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 니다.
-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⑥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험기간이 10 년 이상인 특약은 업무상의 재해일부터 2년 이내,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업무상의 재해일부터 1년 이내 에 그 업무상의 재해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⑧ 제7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⑨ 제1항에서「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별표1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 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

- 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 용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 다.
- ②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③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특히 그 결과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산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로써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자살일 경우 산재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산업재해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 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 니다.
-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거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을 2명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 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 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제11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 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특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유효합니다.

###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12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퇴직, 기타의 사유에 따라 피보험단체(보험대 상단체)로부터 탈퇴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피보험 자의 탈퇴년월일 및 사유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3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 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

### 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 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 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 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1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17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18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6관 기타사항 등

### 제1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장해분류표

### 총칙

#### 1. 장해의 정의

- 1) "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 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10	
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5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정 도를 평가한다.
- 5)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 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 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80 45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 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 다. 귓바퀴의 결손

1)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 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3. 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 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 9) "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 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마. 손바닥 크기

"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times 10$ cm(1/2 크기는 40cm, 1/4 크기는 20cm),  $6 \sim 11$ 세의 경우는  $6 \times 8$ cm(1/2 크기는 24cm, 1/4 크기는 12cm), 6세 미만의 경우는  $4 \times 6$ cm(1/2 크기는 12cm, 1/4 크기는 6cm)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

추뻐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 제1,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 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 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두 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 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 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한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 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 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7. 체간골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 3)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 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 8. 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 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30
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10
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5
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 9. 다리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

- 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군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0. 손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0
(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3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10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5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마다)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 (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 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 다.
- 4) "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 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 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1. 발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5
(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2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8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3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마다)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 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2. 흥·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 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로 한다.

#### 2) 정신행동

- ① 위의 정신행동 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 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 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 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①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

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 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서,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u>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u>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10%)
음식물 섭취	<ul> <li>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li> <li>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li> <li>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10%)</li> <li>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li> </ul>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 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 가능한 상태(3%)

#### 재해분류표

####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 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 별표 3 )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표준이율의
		50%
해지환급금		1년초과기간:1%
(제17조제1항)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 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배당 교보신산업재해장해특약 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신산업재해장해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무배당 교보신산업재해장해특약 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 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주피보험자 : 피보험자 2 명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 다
  - 나. 장해 :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 해상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이하 "업무상의 재해"라 합니 다)로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에서 제14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다음과 같이 산재장 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지 급 액
1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2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90%
3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80%
4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0%
5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60%
6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7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45%
8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40%
9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5%
10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5%
12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 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 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 니다.
-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합니다.
- 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업무상의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 ① 제6항에 따라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업무상의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업무상의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동일한 업무상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 단에서 최종 결정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⑨ 제8항에서 규정한 산재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업무상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산재장해급여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산재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산재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산재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 ① 제8항에 있어서 그 업무상의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서 규정한 장해의 상태 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산재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9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 해로 산재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따라 산재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산재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①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 ③ 제1항에서「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 해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별표1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 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 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 용합니다.
- (5)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 다.
- ⑥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1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 분 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B)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 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재장해의 판정기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산재장해의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산업재해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 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4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 니다.
-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거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

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 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을 2명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 [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제11조(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12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퇴직, 기타의 사유에 따라 피보험단체(보험대 상단체)로부터 탈퇴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피보험 자의 탈퇴년월일 및 사유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3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 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 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 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 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7

-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17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18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6관 기타사항

## 제1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 을 따릅니다.

## 장해분류표

#### 총칙

####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 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100 50 35 25 1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5 10 5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정 도를 평가한다.
- 5)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 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 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80 45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 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 다. 귓바퀴의 결손

1)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3. 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10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 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 6) "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 9) "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 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times 10$ cm(1/2 크기는 40 cm, 1/4 크기는 2Ccm),  $6 \times 11$ 세의 경우는  $6 \times 8$ cm(1/2 크기는 24cm, 1/4 크기는 12cm), 6세 미만의 경우는  $4 \times 6$ cm(1/2 크기는 12cm, 1/4 크기는 6cm)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 제1, 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6) 심한 기형
  -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7) 뚜렷한 기형
  -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 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두 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 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 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한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 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 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7. 체간골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 3)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 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 8. 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 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 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	20
를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10
애들 담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 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20 10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 9. 다리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30
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 은 미국의사협회(A.M.A.) "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 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 10. 손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하나마다)	55 15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3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마다)	5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 (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 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 다.
- 4) "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

- 신(굽히고 퍼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1. 발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5
(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2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8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	3
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마다)	

- 1) "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 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2. 횽·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

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 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2) 정신행동

- ① 위의 정신행동 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 <붙임> 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 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 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 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 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①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ሁ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자가 시행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 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

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 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서,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u>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u>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ul> <li>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li> <li>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li> <li>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li> <li>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li> <li>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li> <li>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li> <li>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li> </ul>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 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 가능한 상태(3%)

# 재해분류표

####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 별표 3 )

# 장해등급분류표

등	신 체 장 해	
제 1급	<ol> <li>두 눈이 실명된 사람</li> <li>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li> <li>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li> <li>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li> <li>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li> </ol>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 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등급	신 체 장 해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 5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 6 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등급	신 체 장 해	
제 7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ㆍ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결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8급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경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 착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등급	신 체 장 해
제10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3.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착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자라 보는 가락을 판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등급	신 체 장 해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 12급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 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 흉골, 늑골, 건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u> </u>	사 테 자나 를	
등급	신 체 장 해	
제 13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쪽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 14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참고〉

-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 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6. 산재장해의 판정기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산재장해의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 별표 4)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1년이내:표준이율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50%
해지환급금		1년초과기간:1%
(제17조제1항)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 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배당 건강치료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건강치료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무배당 건강치료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 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 상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8대특정질병" 및 "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8대특정질병"이라 함은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특정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의 장애, 결핵 및 폐렴, 신부전증 중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4 "8대 특정질병 분류표" 참조)

- 1.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 티스심장질환, 허혈성심질환, 폐성심장질환 및 폐순환 의 질환, 기타형태 심장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 다. 또한 "심장질환"중 급성심근경색증(急性心筋梗塞 症)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허혈성심장질환 중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번호 121~123)을 말합니다.
- 2. "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 분류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 뇌혈관질환" 중 "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질환중에서 지주막하출혈, 뇌 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분류되는 질병 (분류번호 160~162)을 말합니다.
- 3. " 간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 에서 바이러스 간염, 간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4. "특정만성호흡기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의 기본분류에서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 상세불 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상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의 기본분류에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 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6. " 갑상선의 장애"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 본분류에서 갑상선의 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 다.
- 7. " 결핵"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서 결핵, 결핵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 다.

- 8. " 폐렴"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서 폐렴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9. " 신부전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 류에서 신부전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8대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에 따릅니다.
- ③ 이 특약에서 "2대질병"이라 함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하며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④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⑤ 급성심근경색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 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의 만성부 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 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 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 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제5조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을 치료할 때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다만,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 1. "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 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2. "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 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 다
- 3. "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 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 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 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 위를 말합니다.

5. "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 가 있는 제대혈(배꼽의 탯줄의 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 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제6조 ("부인과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부인과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별표6) "부인과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부인과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에 따릅니다.

# 제7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8대특정질병 또는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2 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 2대질병치료비 지급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며,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50% 감액 지급)
  - ※ 2대질병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5 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 : 5대장기이식수술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하며,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50% 감액 지급)
-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조 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 하며,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50% 감 액 지급)
-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8 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8대특정질병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 8대특정질병입원비 지급
  - ※ 8대특정질병 :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특정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의 장애, 결핵 및 폐렴, 신부전증
- 5.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부 인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 부인과질환입원비 지급 (다만,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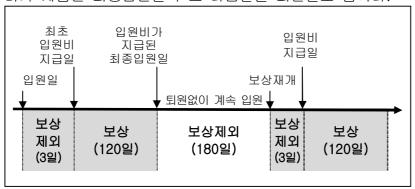
##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

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 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 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⑥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3호의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미만에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5대장기 이식수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약정한 보 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2대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2대질병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⑧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⑨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8대특정질병 또는 동일한 부인과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8항을 적용합니다.
-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8대특정질병 또는 동일한 부

인과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①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계속 중인입원기간에 대하여 제8항을 적용하여 계속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제11항에서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하며, 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③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8대특정질병 또는 동일한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⑥ 제15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 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 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제1항의「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 를 말합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 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제20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0을 결정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 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서 정하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11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2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입·퇴원확인서, 수술증명 서, 장해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13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7)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4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15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5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 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제15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 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 제16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었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17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18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9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 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

- 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 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유정에 따라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유정에 따라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유정에 따라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유정에 따라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9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의 규정을 따릅 니다.

####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2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23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6관 기타사항 등

## 제24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2대질병 치료비 (제8조 제1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2대질병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 증	2,000만원 (다만,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되 었을 경우 50% 감 액 지급)
5대장기이식 수술비 (제8조 제2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5대장기이식수술 을 받았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500만원 (다만, 가입 후 1년 미만에 수술을 받 았을 경우 50% 감 액 지급)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제8조 제3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조혈모세포이식수 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500만원 (다만, 가입 후 1년 미만에 수술을 받 았을 경우 50% 감 액 지급)
8대특정질병 입원비 (제8조 제4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8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8대특정질병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 였을 경우 ※ 8대특정질병 : 주요 류마티스 및 심 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특정만성 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의 장애, 결핵 및 폐렴, 신부전 증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 수 120일 한도)
부인과질환 입원비 (제8조 제5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부인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 을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 우에 한함)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 수 120일 한도)

<sup>※</sup>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 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 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재해분류표

####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 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위 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 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장해분류표

#### 총칙

#### 1. 장해의 정의

- 1) "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 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⑱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10
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5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하다
-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 5)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 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 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45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 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 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 다. 귓바퀴의 결손

1)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 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3. 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당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장해의 분류	지급률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10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5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10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 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 9) "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 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times 10 \text{cm} (1/2 크기는 40 \text{cm}^2, 1/4 크기는 20 \text{cm}^2), 6 ~ 11 세의 경우는 <math>6 \times 8 \text{cm} (1/2 크기는 24 \text{cm}^2, 1/4 크기는 12 \text{cm}^2), 6세 미만의 경우는 <math>4 \times 6 \text{cm} (1/2 크기는 12 \text{cm}^2, 1/4 크 기는 6 \text{cm}^2)$ 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약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 제1, 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 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두 마디 이상 수술하거 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한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 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7. 체간골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 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 8. 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 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100 60 30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장해의 분류	지급률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 제한된 경우

-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 9. 다리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10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5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0. 손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마다)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 (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 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 다.
- 4) "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1. 발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5
(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2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8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3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 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2. 흥·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로 한다.

#### 2) 정신행동

- ① 위의 정신행동 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 <붙임> 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 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 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 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①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 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서,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ul> <li>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li> <li>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li> <li>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li> <li>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li> </ul>	
음식물 섭취	<ul> <li>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li> <li>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li> <li>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10%)</li> <li>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li> </ul>	
배변·배뇨	<ul> <li>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li> <li>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li> <li>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li> </ul>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 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 가능한 상태(3%)

## (별표 4)

## 8대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8대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1. 심장 침범이 없는 류마티스열	100
2.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O1
3. 류마티스무도병	102
4. 류마티스승모판질환	105
5. 류마티스대동맥판질환	106
6. 류마티스삼첨판질환	107
7. 다발성 판막 질환	108
8. 기타 류마티스 심장질환	109
9. 협심증	120
10. 급성 심근경색증	l21
11. 이차성 심근경색증	122
12.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123
13.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124
14. 만성 허혈성 심장병	125
15. 폐색전증	126
16. 기타 폐성 심장질환	127
17. 기타 폐혈관질환	128
18. 급성 심낭염	130
19. 기타 심낭의 질환	I31
2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낭염	132

분류항목	분류번호
21.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133
22.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134
23.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l35
24. 비류마티스성 삼첨판 장애	I36
25. 폐동맥판장애	l37
26.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138
2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 판막장애	139
28. 급성 심근염	140
2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30. 심근병증	142
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143
32.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144
33. 기타 전도장애	145
34. 심장정지	146
35. 발작성 빈맥	147
36. 심방 세동 및 조동	148
37. 기타 심장부정맥	149
38. 심부전	150
39.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1
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152
 뇌혈관 질환	
41. 지주막하출혈	160
42. 뇌내출혈	l61
4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4. 뇌경색증	163
4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164

분류항목	분류번호
4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4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48. 기타 뇌혈관 질환	167
4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68
5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간질환	
51. 급성 A형 간염	B15
52. 급성 B형 간염	B16
53. 기타 급성 바이러스간염	B17
54. 만성 바이러스간염	B18
55.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간염	B19
56. 알코올성 간질환	K70
57. 독성 간질환	K71
5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K72
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K73
60. 간의 섬유증 및 경화증	K74
61. 기타 염증성 간질환	K75
62. 간의 기타 질환	K76
6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 장애	K77
특정만성호흡기질환	
64.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65.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
66.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2
67. 천식	J45
68. 천식지속 상태	J46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분류항목	분류번호
69. 위궤양	K25
70. 십이지장궤양	K26
71.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
갑상선의 장애	
72. 선천성 요오드결핍증후군	E00
73. 요오드결핍과 관련된 갑상선장애 및 동류의 병태	E01
74. 준임상적인 요오드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2
75.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E03
76. 기타 비중독성 고이터	E04
77.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E05
78. 갑상선염	E06
79. 갑상선의 기타 장애	E07
페렴 및 결핵	
80.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A15
81.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A16
82. 신경계통의 결핵	A17
83. 기타 기관의 결핵	A18
84. 좁쌀 결핵	A19
85. 결핵의 후유증	B90
8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2
87.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	J13
88.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폐렴	J15
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9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분류항목	분류번호
92.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신부전증	
93. 급성 신부전	N17
94. 만성 신장질환	N18
95. 상세불명의 신부전	N19

<sup>※</sup>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5)

##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뇌출혈	
1. 지주막하 출혈	160
2. 뇌내출혈	l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급성심근경색증	
4. 급성 심근경색증	l21
5. 이차성 심근경색증	122
6.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123

<sup>※</sup>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6)

## 부인과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부인과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유방의 장애	
1. 양성 유방 형성이상	N60
2.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1
3. 유방의 비대	N62
4.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N63
5. 유방의 기타 장애	N64
여성 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	
6. 난관염 및 난소염	N70
7.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N71
8.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72
9. 기타 여성 골반염증성 질환	N73
1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 골반 염증성 장애	N74
11. 바르톨린샘의 질환	N75
12.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N76
1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외음질의 궤양 및 염증	N77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14. 자궁내막증	N80
15. 여성 생식기 탈출	N81
16. 여성 생식기를 포함한 누공	N82
17. 난소, 난관 및 넓은 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N83
18. 여성 생식관의 폴립	N84

분류항목	분류번호
19. 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5
20.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N86
21. 자궁경부의 이형성	N87
22. 자궁경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8
23. 질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9
24. 외음부 및 회음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90
25. 무월경, 소량 및 희발 월경	N91
26. 과다, 빈발 및 불규칙 월경	N92
27. 기타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N93
28. 여성 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련된 통증 및 기타 병 태	N94
29. 폐경기 및 기타 폐경기전후 장해	N95
비뇨생식계통의 기타 장애	
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N99
· · · · · · · · · · · · · · · · · · ·	
31. 입 및 인두의 양성 신생물	D10
32. 주침샘의 양성 신생물	D11
33.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D12
34. 기타 및 부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D13
35.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D14
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양성 신생물	D15
37. 뼈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D16
38.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D17
39. 모든 부위의 혈관종 및 림프관종	D18
40.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D19
41.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D20
42.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1

분류항목	분류번호
43. 멜라닌세포모반	D22
44. 피부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3
45. 유방의 양성 신생물	D24
46. 자궁의 평활근종	D25
47.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6
48.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7
4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 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8
50. 남성 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9
51.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D30
52. 눈 및 눈부속기의 양성 신생물	D31
53.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54.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55.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D34
56.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D35
57.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양성 신생물	D3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8.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D37
59.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 상의 신생물	D38
60.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9
61.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62.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3.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4.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D43
65.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분류항목	분류번호
66.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 타 신생물	D47 (D47.1, D47.3, D47.4, D47.5 제외)
67.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습관 유산자(N96), 여성불임(N97),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N98)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만성 골수성 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D47.3), 골수 섬유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D47.5)은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별표 7)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3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 1.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 제8조 1호에서 제5호)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2. 해지환급금 ( 제23조 제1항 )

기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	1년이내	표준이율의 50%
지의 기간	1년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 II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 II 약관 (주피형, 종피형)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 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 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
    - ł.상해 :(멸표 3) 상해문류표에서 성한 기순에 따른 상해 - 상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

표4)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제8조("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 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 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 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 니다)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 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 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4조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 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 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5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5) "제자리의 신생물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8조("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제외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6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 조]으로 암, 제자리암 및 대장점막내암과는 구분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7조 ("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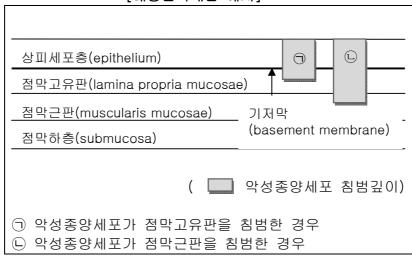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 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 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8조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 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신생물(암)(C18~C20)에 해당 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 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통 과하여 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mucosae) 또는 점막근판 (muscularis mucosae)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 (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 다.(이하 "대장점막내암"이라 합니다)

## [대장점막내암 예시]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 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 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9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1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 암직접치료입원비 지급
-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 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 기타피부암직접치료입원비 지급
-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 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 제자리암직접치료입원비 지급
-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 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 대장점막내암직접치료입원비 지급
- 5.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 경계성종양직접치료입원비 지급
- 6.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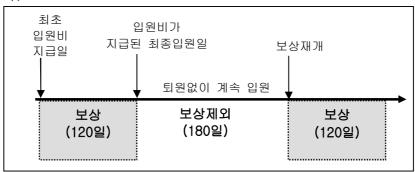
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갑상선암직접치료입원비 지급

##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⑥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6호의 경우 입원 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⑦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6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동일한 기타피부암, 동일한 제자리암, 동일한 경계성종양, 동일한 갑상선암 또는 동일한 대장점막내암의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6항을 적용합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 동일한 기타피부암, 동일한 제자리암, 동일한 경계성종양, 동일한 갑상선암 또는 동일한 대장점막내암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⑨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6호의 경우 피보 험자가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6항을 적용하여 계속 입원비를 지급합 니다.
- ⑩ 제9항에서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하며, 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⑪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6호의 경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또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 으로 봅니다.
- ⑫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1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 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 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의「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 를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 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1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6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 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서 정하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1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4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입·퇴원확인서, 장해진단 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1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7)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6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17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7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 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 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

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 제18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 1.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제19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20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21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 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그 날부터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유정에 따라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유정에 따라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유정에 따라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1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의 규정을 따릅 니다.

##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25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26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암직접치료 입원비 (제10조 제1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 정되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1회 입원당 지급 일수 120일 한도)
기타피부암 직접치료 입원비 (제10조 제2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 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지급 일수 120일 한도)
제자리암 직접치료 입원비 (제10조 제3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으로 진 단확정되고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지급 일수 120일 한도)
대장점막내암 직접치료 입원비 (제10조 제4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 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지급 일수 120일 한도)
경계성종양 직접치료 입원비 (제10조 제5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 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1회 입원당 지급 일수 120일 한도)
갑상선암 직접치료 입원비 (제10조 제6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 단확정되고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1회 입원당 지급 일수 120일 한도)

-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 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 재해분류표

####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 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위 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 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장해분류표

#### 총칙

#### 1. 장해의 정의

- 1) "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 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10
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5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 5)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 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 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80 45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 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 다. 귓바퀴의 결손

1)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 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3. 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나. 장해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40

장해의 분류	지급률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10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 가한다.
- 9) "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 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times10$ cm(1/2 크기는 40cm, 1/4 크기는 20cm),  $6\sim11$ 세의 경우는  $6\times8$ cm(1/2 크기는 24cm, 1/4 크기는 12cm), 6세 미만의 경우는  $4\times6$ cm(1/2 크기는 12cm, 1/4 크기는 6cm)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 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 제1,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 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 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두 마디 이상 수술하거 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한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 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 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7. 체간골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 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 8. 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 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30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10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5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장해의 분류	지급률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9. 다리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10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5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 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산한다.

#### 10. 손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0
(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3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10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5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 (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 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 다.
- 4) "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1. 발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5
(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2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8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3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 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2. 흥·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로 한다.

#### 2) 정신행동

- ① 위의 정신행동 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 <붙임> 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 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 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 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①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 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서,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u>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u>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 태(3%)
옷입고 벗기	<ul> <li>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li> <li>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li> <li>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li> </ul>

# (별표 4)

#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암)	분 류 번 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6.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8.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대 상 악 성 신 생 물(암)	분류번호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8조 ("대장암 중 대장점막 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 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별표 5)

#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서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8조("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별표 6)

#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 (D47.1,D47.3 D47.4,D47.5제외)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신생물	D48

-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 (D47.3), 골수 섬유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별표 7)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5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 1. 입원비 ( 제10조 1호에서 제6호)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2. 해지환급금 ( 제25조 제1항 )

기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 지의 기간	1년이내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배당 교보암진단특약(갱신형) V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암진단특약(갱신형) V 를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무배당 교보암진단특약(갱신형) V 약관 (주피형, 종피형)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 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제7조("대장암 중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 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4조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유방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 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합니다.

② "유방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방암으로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5조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 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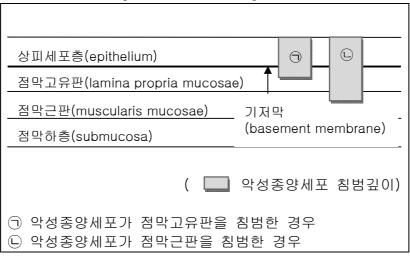
# 제6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중 별표3 [제자리의 신생물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7조("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7조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 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통과하여 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mucosae) 또는 점막근판(muscularis mucosae)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이하 "대장점막내암"이라 합니다)

# [대장점막내암 예시]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

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8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 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암, 제자리암 및 대장점막내암과는 구분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fixed tissue)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 제9조 ("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 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제24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 항에서 정한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로 이하 " 암보 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암 진단보험금 지급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하며, 여성에 한하여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암보장개시일 이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는 약정한 암진단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지급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지급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 대장점막내암 진단보험금 지급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 5.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지급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지급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진단보험금, 제2호의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제3호의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제4호의 대장점막내암 진단보험금, 제5호의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또는 제6호의 갑상선암 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

- 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진단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경 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과 동일한 질병(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 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 니다.

- ① 제4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및 제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제4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 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 및 제6항의 "청약일"은 부활 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 ⑨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며, 여성에 한하여 보험계약일부터 180일(암보장개시일 이후 90일)이지나기 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는 약정한암진단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 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1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4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1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 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 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 다)

###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 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 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 약의 처리결과를 "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 (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 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 ③ 제19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9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

- 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⑤ 이 특약을 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23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합니다.

# 제19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 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 다.
  - 2. 종피형의 경우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 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 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 제20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1.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 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 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 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제2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급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22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부터 제 23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 간 만료일까지가 3년(갱신할 때 보험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 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제23조 (특약의 갱신)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 전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피보

- 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 당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 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
  - 2.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예외)
- 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24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 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

- 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 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계약을 준용합니다.
- ⑤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전 계약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그러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 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 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 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 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

- 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 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8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 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 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

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 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일로 하며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2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28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보험

- 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7관 기타사항 등

# 제29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 진단보험금 (제10조 제1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 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부터 1년 미만 진단 확정된 경 우 50% 감액 지급) ※유방암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80일(암보 장개시일 이후 90일)이 지나 기 전에 진단 확정된 경우 위의 금액의 10% 지급 (다만, 여성에 한함)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제10조 제2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 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 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 단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부터 1년 미만 진단 확정된 경 우 50% 감액 지급)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제10조 제3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 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 후에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부터 1년 미만 진단 확정된 경 우 50% 감액 지급)
대장점막내암 진단보험금 (제10조 제4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 에한함)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부터 1년 미만 진단 확정된 경 우 50% 감액 지급)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제10조 제5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 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 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 단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부터 1년 미만 진단 확정된 경 우 50% 감액 지급)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제10조 제6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 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 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부터 1년 미만 진단 확정된 경 우 50% 감액 지급)

####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 니다.
-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 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 상선암으로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과 동일한 질병(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진단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 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 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 5.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호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중 해당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7. 제4호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 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및 제6호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8. 제2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제4호의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 및 제6호의 "청약 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 9. 위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별표 2 )

#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암)	분 류 번 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6.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8.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중 제7조("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 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sup>※</sup>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sup>※</sup>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7조("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위의 분 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 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 (D47.1,D47.3 D47.4,D47.5제외)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 (D47.3), 골수 섬유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별표 5 )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5조 제2항 및 제28조 제2항 관련)

# 1. 진단보험금 ( 제10조 제1호에서 제6호 )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2. 해지환급금 ( 제28조 제1항 )

기 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1년이내	표준이율의 50%
까지의 기간	1년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 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내용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2015년 3월 기준이며, 해당 법령 개정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우선됩니다.

# 제1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바. A형간염

#### 제2관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 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 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 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

####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 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 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 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

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 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 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 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 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 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 용하는 경우
- ② 삭제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삭제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수 없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 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 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

- 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 제3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등록 및 결정)

-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 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

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4관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요양급여)

-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1. 진찰·검사
  -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4. 예방·재활
  - 5. 입원
  - 6. 간호
  - 7. 이송(移送)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 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41조의2(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약사법」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 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 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 도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요양기관)

-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 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 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 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 관과 달리 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 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5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별표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제19조제2항 관 련)

- 1.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총액의 상한(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나목에 따른 상한액 기준보험료의 구간별로 가목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 1) 계산식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 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 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
- 3) 1)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 나.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단위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
  - 1) 지역가입자인 경우
  -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제6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31.>

# [별표 2] <개정 2014.9.1.>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 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 라. 단순 코골음
  -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

- 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삭제>
- 라.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 주사 제외)
  -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全 顎)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 라.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의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 학적검사
  -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가입자 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대상인 입원료(이하 "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상 중 1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입원 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 환자 6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일반병상의 입원료(이하 "최저입원료"라 한다)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 (나)「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다음 표에 따른 비율

구분	확보비율
보건복지부령 제30호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종합병 원	최저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 반병상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보건복지부령 제30호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종합병 원	최저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 반병상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 고, 2010. 12. 23. 이후 신설 병 상 중 일반병상을 70퍼센트 이 상 확보할 것
그 외의 모든 종합병원	일반병상을 70퍼센트 이상 확보 할 것. 이 경우 최저입원료만으 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이 총 병 상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 다.

-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등이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다만,「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당하는 입원실 이용비용
- 다.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

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 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 는 제외한다.

- 라.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 마.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 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 사. 및 아. 삭제 <2002.10.24>
- 자.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 법」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 차. 삭제 <2006.12.29>
- 카. 「의료법」 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 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 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 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하.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 의 신의료기술 등. 다만, 제11조제8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 는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한다.
- 거.「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에 따른 제 한적 의료기술
- 너.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 5. 삭제 <2006.12.29>
- 6.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 사목, 제3호 아목, 제4호거목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 나.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 제
-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른다.

# 제7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으
  -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 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 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제8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 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9관 모자보건법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9. "가족계획사업"이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 태조절(受胎調節)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10. "모자보건요원"이란 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11.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10관 민법

####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 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제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 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 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11관 보험업법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라. 주권상장법인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 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관 보험업법시행령

####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지방자치단체
  - 2. 주권상장법인
  -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 1. 보험회사
  -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1. 지방자치단체
  -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 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 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11. 삭제
  - 1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외국 정부
  -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다. 외국 중앙은행
  -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 이
-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 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제13관 상법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제14관 소득세법

### 제20조의3(연금소득)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 "이라 한다)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연금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 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

- 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 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 다.
-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소득금액으로 보아소득세를 계산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기본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 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1. 해당 거주자
  -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 세 이상인 사람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 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 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 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④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 시술비"란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한다)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 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 ③ 삭제
-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5관 소득세법 시행령

#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 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 게 제출하는 경우
    - 가. 천재지변
    -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 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 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 이 필요한 경우
    -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 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 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 ④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 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 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 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 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 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체결시 점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 계약은 포함한다)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 약
  -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일 것
  -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 나.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 다.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 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 연수"라 한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 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 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라.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

을 것

마.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 3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

- 4.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 가. 삭제
    - 나.「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 합
    - 다. 삭제
    -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때에는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1항제2호나목에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

약변경 이후에도 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 액하는 경우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 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 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 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 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 (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 2.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 3.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 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 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 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 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 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 계약
    -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 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9조의 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할 수 있다.
  -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 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 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 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 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 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 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 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 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 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 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 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 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 좌(이하 이 조에서 "이체계좌"라 한다)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 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 2.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이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④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 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 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 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일부 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 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출한 금 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

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

-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 2.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 1.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에 지급한 비용
  -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보 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 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 인일부부담금
-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 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

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 (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제9조(등록)

-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 제17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 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 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 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 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 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

- 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 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 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⑤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⑥ 제4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 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⑧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 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8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 는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 2.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마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 자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만 해당한다.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

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이하 생략)

# 제19관 약사법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 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 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 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 [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 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이하 생략)

# 제20관 예금자보호법

## 제31조(보험금등의 지급)

- ①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 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 ②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일

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자·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 합병후 존속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부보금융기관은 그 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 합병후 존속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부보금융기관과 합병 또는 전환으로 소멸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전의 부보금융기관이 각각독립된 부보금융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⑤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 ⑥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관련자에 해당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⑧ 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7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의 규정 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⑨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사고 가 발생한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자등에게 가지는 항변으로써 보 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32조(보험금의 계산등)

-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 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 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④ 각 예금자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환급하여야 한다.

# 제21관 의료급여법

##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진찰·검사
  -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 4. 예방·재활
  - 5. 입원
  - 6. 간호
  -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22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1. 삭제
  - 2. 삭제
- ② 삭제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 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 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 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 금(별표 1 제1호라목·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1종수급권자 : 2만원

-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 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 매 6개월간 60만원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23관 의료법

## 제2조(의료인)

-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 진다.
  -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 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 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 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 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일 것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 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 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 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 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제24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 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 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 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 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 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제25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 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 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

-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 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 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65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 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 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 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제26관 장애인 복지법

# 제32조(장애인 등록)

-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할 수 있다.
-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 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관 전자서명법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 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 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 다.
-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 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생략)

-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28관 조세특례제한법

###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 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 2천원 또는 해당 해지환급금 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받은 자가 그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 ④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해당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 을 증명하는 경우

- 2. 사망·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⑤ 제3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삭제
-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업자(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 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 전에 출생한 사람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가입자의	불입기간	
출생연도	1994년 가입 시	1995년 가입 시
1949년	10년 이상	9년 이상
1948년	9년 이상	8년 이상
1947년	8년 이상	7년 이상
1946년	7년 이상	6년 이상
1945년	6년 이상	5년 이상
1944년 이전	5년 이상	5년 이상

-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 5.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 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 ②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③ 삭제
- ④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 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천재·지변

- 2. 저축자의 퇴직
- 3. 사업장의 폐업
-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 병의 발생
-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86조 의2·제87조·제88조·제88조의2·제89조를 적용할 때 각각 개인연 금저축·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생계형저축·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 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3.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⑦「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 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관 지역보건법

#### 제7조(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8조(보건의료원)

- ①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② 삭제 <1999.2.8.>

##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1관 통계법

#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 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 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관 형법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289조(인신매매)

-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 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 은닉 등)

-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 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 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